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2011. 1. 1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11. 1. 12(수)	담당자	김대환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홍보담당	김 세 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26, 9013	총2매

제목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마련 절실

보험연구원,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지급보장장치 설치 시급” 주장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지급보장체계 특징 비교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보장장치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수급권 보장장치들이 매우 미흡하다”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별도의 퇴직연금 보장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보장장치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영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파산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금지급보증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위한 별도의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먼저,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였을때 기업의 총재산에 대하여 퇴직연금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변제 범위가 3년간의 퇴직급여로 한정되어 있어 3년 이상 장기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

둘째,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이지만, 제도 자체가 퇴직연금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수준이 극히 제한적이며,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연령별로 상한액을 설정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셋째, 현행 최소적립금제도는 확정급여형제도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도입되었으나, 최소적립금의 기준이 적정수준의 60%에 불과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나머지 40%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기업이 파산할 당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산운용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수급권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최소적립금 수준을 조속히 상향조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을 위한 별도의 수급권 보장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별도의 퇴직연금 보장장치가 마련될 경우, 기업, 근로자 및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료 부과 및 감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급권 보장장치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